"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노회 서기 및 선교부장

발신부 세계선교부

제 목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2026.02.27.)과 함께 과세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노회와 지역교회가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 있어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첨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 끝.

총 회 장 정 훈

부 장 김 후 식

접수-240
2026/08/24
서울북노회

과장 채송희 실장 신윤정 총무 류현웅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해외·다문화선교처 - 1784 (2026.08.19)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 ,7F/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63-9764 전송 02-763-7331 / songhee@pcknet.org
/ www.pck.or.kr
/공개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 관련)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701호 총회세계선교부

www.pckwm.org. pckwm@pck.or.kr 02-763-9764

사랑하는 후원 교회와 당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귀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들을 섬겨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세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 있어, 기도를 부탁드리며 안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선교사 개인 계좌로 재정을 직접 송금해 온 관행은 선교 현장의 긴급한 필요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엄격해진 법적 기준 안에서는 이러한 송금 방식이 선교사와 교회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세무상 불이익과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교단과 총회세계선교부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후원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며 선교 재정(생활비·사역비 및 사업비)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진행 중이며, 올 11월 경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지침이 최종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교단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향후 한교총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최종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선교 현장과 후원 교회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오니, 향후 안내해 드릴 구체적인 지침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교회의 선교 행정 실무에서도 이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1항).

(국내외 공익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한정)

기존 세법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이기만 하면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종교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서 전면 제외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일반 기부금 인정 범위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 소재 소속 단체로 한정)

기존 세법은 해외에 소재한 종교단체나 외국 법인이라도 종교 보급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단체'로만 일반기부금 단체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원칙과 더불어, 우리가 세법상 반드시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기준은 바로 선교사의 (국내) '거주자' 혹은 (국내) '비거주자' 여부입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교사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느냐 혹은 해외에 주된 기반을 둔 '비거주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 선교사는 과세 범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후원 선교사의 신분과 활동 형태에 따른 세법상 거주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회는 이에 맞춰 후원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선교사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거나, 주요 자산 및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선교사는 국내외 모든 소득과 증여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다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선교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후 선교사 개인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선교사가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 생활 기반이 사실상 없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인 선교사의 해외 현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후원금 송금 방식에 따라 선교사와 교회 모두에게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선교사가 개인 계좌로 거액의 선교비를 송금받는 경우, 거주자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추징 위험에 노출됩니다. 과세당국이 공식 증빙이 없는 개인 송금을 사적 자산 형성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정 세법에 따라, 교회가 비거주자 선교사의 해외 사역지나 외국 법인으로 직접 송금하는 후원금은 기부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당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납세 의무가 없던 비거주 선교사는 예기치 못하게 증여세를 부과 받을 위험에 처하고, 후원교회는 해당 지출을 정식 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선교사와 교회 모두 세무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행 지침

아래의 지침들은 선교사와 교회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기존 총회파송 선교사의 경우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가 총회 파송 선교사라면 기존 방식(재정창구일원화)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역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투명하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교단 총회는 개교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5% 선교행정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재정창구일원화 원칙을 준수하여 총회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교단 차원의 외환 우대를 통해 시중은행 직접 송금 대비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기 사례비(생활비)의 소득세 전환
선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성격의 재정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내 원천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절차

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교사의 생활을 '숨겨야 하는 급여'가 아니라, 국가 앞에서도 당당한 공적 소득으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선교사의 사회보장과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대규모 선교 사업비의 송금 구조 전환 대비
현재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세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구호, 대형 사역 프로젝트 등 규모가 큰 선교 사업비는 가급적 대응 지침이 나오는 11월까지 송금을 잠시 유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장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 교회와 선교 현장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되 공적 목적의 사역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교사 개인에게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의 재정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④ 철저한 정산 증빙 자료 구비
선교사가 특정 사역을 수행한 후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해 주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지출 영수증
- 지출 내역서
- 사역 결과 보고서

제출 방식은 서면은 물론, 스캔본이나 전자파일 형태(PDF, 이미지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선교사의 세무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회의 사역비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교회는 이 자료들을 공익법인 세무 증빙 서류로 보관함으로써, 향후 세무 조사나 행정 점검 시 선교 사역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선교사와 후원 교회에 또 하나의 행정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제도 변화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선교 동역자들이 세무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교회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총회 세계선교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763-9764)

한국 교회와 선교사의 헌신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08.21.
총회 세계선교부 드림